

#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2BL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1-233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4.23.(목)	26.05.06.(수)	26.05.07.(목)	26.05.08.(금)	26.05.15.(금)	26.05.16.(토)~ 26.05.24.(일)	26.05.26.(화)~ 26.05.29.(금)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b>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b>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엘리프성성호수공원.com](http://www.엘리프성성호수공원.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3.(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5.06.(수)	26.05.07.(목)	26.05.08.(금)	26.05.15.(금)	26.05.16.(토)~ 26.05.24.(일)	26.05.26.(화)~ 26.05.29.(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충청남도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취득가액 6억원 이상인 주택만 해당)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 - 17546호(2026.04.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2구역 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29층 6개동 총 619세대 중 임대분양 59세대 제외 일반분양 560세대

[특별공급 241세대(기관추천 40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93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3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50	01	084.9563A	84A	84.9563	23.6686	108.6249	46.7122	155.3371	43.7994	246	25	11	33	4	10	83	163	10
	02	084.9527B	84B	84.9527	23.2056	108.1583	46.7102	154.8685	43.7976	160	15	18	60	5	26	124	36	7
	03	111.1359	111	111.1359	29.3823	140.5182	61.1067	201.6249	57.2964	154	-	27	-	7	-	34	120	6
	합 계									<b>560</b>	<b>40</b>	<b>56</b>	<b>93</b>	<b>16</b>	<b>36</b>	<b>241</b>	<b>319</b>	<b>23</b>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주거전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563A	084.9527B	111.1359
약식표기	84A	84B	111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11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2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	3	
	장애인	충청남도	5	4	-	9
		대전광역시	4	2	-	6
		세종특별자치시	4	2	-	6
	중소기업 근로자	5	3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18	27	56	
신혼부부 특별공급		33	60	-	9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5	7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26	-	36	
<b>합 계</b>		<b>83</b>	<b>124</b>	<b>34</b>	<b>241</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라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6.10.30	27.03.31	27.08.31	28.02.29	28.06.30	28.10.31		
084.9563A	84A	202동 1호 206동 3호	1층	2	178,345,200	325,454,800	-	503,800,000	10,000,000	40,380,000	50,380,000	50,380,000	50,380,000	50,380,000	50,380,000	50,380,000	50,380,000	151,140,000
			2층	2	182,310,000	332,690,000	-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3층	2	186,274,800	339,925,200	-	526,200,000	10,000,000	4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157,860,000
			4층	2	190,239,600	347,160,400	-	537,400,000	10,000,000	4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161,220,000
			5~9층	10	194,204,400	354,395,600	-	548,600,000	10,000,000	4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164,580,000
			10~19층	20	198,169,200	361,630,800	-	559,800,000	10,000,000	4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167,940,000
			20층 이상	14	202,134,000	368,866,000	-	571,000,000	10,000,000	4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71,300,000
		202동 3호 203동 3호 204동 1,2,4호 206동 5호	1층	4	165,884,400	302,715,600	-	468,600,000	10,000,000	3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46,860,000	140,580,000
			2층	4	169,566,000	309,434,000	-	479,000,000	10,000,000	3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43,700,000
			3층	6	173,247,600	316,152,400	-	489,400,000	10,000,000	3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146,820,000
			4층	4	176,929,200	322,870,800	-	499,800,000	10,000,000	3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49,980,000	149,940,000
			5~9층	26	180,610,800	329,589,200	-	510,200,000	10,000,000	4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51,020,000	153,060,000

		205동 3,5호	10~19층	52	184,292,400	336,307,600	-	520,600,000	10,000,000	4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156,180,000		
			20층 이상	50	187,974,000	343,026,000	-	531,000,000	10,000,000	4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1층	2	172,999,800	315,700,200	-	488,700,000	10,000,000	3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146,610,000	
			2층	1	176,858,400	322,741,600	-	499,600,000	10,000,000	3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49,960,000	149,880,000	
			3층	2	180,681,600	329,718,400	-	510,400,000	10,000,000	4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51,040,000	153,120,000	
			4층	1	184,540,200	336,759,800	-	521,300,000	10,000,000	4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52,130,000	156,390,000	
			5~9층	8	188,398,800	343,801,200	-	532,200,000	10,000,000	4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159,660,000	
			10~19층	16	192,222,000	350,778,000	-	543,000,000	10,000,000	4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62,900,000	
20층 이상	18	196,080,600	357,819,400	-	553,900,000	10,000,000	4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55,390,000	166,170,000				
084.9527B	84B	201동 2호 202동 2호 203동 1,2호 204동 3호	1층	4	160,220,400	292,379,600	-	452,600,000	10,000,000	3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45,260,000	135,780,000		
			2층	2	163,760,400	298,839,600	-	462,600,000	10,000,000	3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138,780,000		
			3층	5	167,335,800	305,364,200	-	472,700,000	10,000,000	3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141,810,000		
			4층	2	170,875,800	311,824,200	-	482,700,000	10,000,000	3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144,810,000		
			5~9층	19	174,451,200	318,348,800	-	492,800,000	10,000,000	39,28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49,280,000	147,840,000		
			10~19층	38	177,991,200	324,808,800	-	502,800,000	10,000,000	4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50,280,000	150,840,000		
			20층 이상	40	181,566,600	331,333,400	-	512,900,000	10,000,000	4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51,290,000	153,870,000		
		205동 4호	1층	1	167,088,000	304,912,000	-	472,000,000	10,000,000	3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2층	1	170,805,000	311,695,000	-	482,500,000	10,000,000	3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48,250,000	144,750,000		
			3층	1	174,522,000	318,478,000	-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4층	1	178,239,000	325,261,000	-	503,500,000	10,000,000	4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50,350,000	151,050,000		
			5~9층	5	181,956,000	332,044,000	-	514,000,000	10,000,000	4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54,200,000		
			10~19층	10	185,673,000	338,827,000	-	524,500,000	10,000,000	4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52,450,000	157,350,000		
			20층 이상	8	189,390,000	345,610,000	-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206동 4호	1층	1	172,256,400	314,343,600	-	486,600,000	10,000,000	3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48,660,000	145,980,000		
			2층	1	176,079,600	321,320,400	-	497,400,000	10,000,000	39,740,000	49,740,000	49,740,000	49,740,000	49,740,000	49,740,000	149,220,000		
			3층	1	179,938,200	328,361,800	-	508,300,000	10,000,000	4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152,490,000		
			4층	1	183,761,400	335,338,600	-	519,100,000	10,000,000	41,910,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51,910,000	155,730,000		
			5~9층	5	187,584,600	342,315,400	-	529,900,000	10,000,000	4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158,970,000		
			10~19층	10	191,407,800	349,292,200	-	540,700,000	10,000,000	4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162,210,000		
			20층 이상	4	195,231,000	356,269,000	-	551,500,000	10,000,000	4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165,450,000		
		111.1359	111	201동 1호 206동 1호,2호	1층	3	242,277,600	401,929,455	40,192,945	684,400,000	10,000,000	5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68,440,000	205,320,000
					2층	3	247,658,400	410,856,000	41,085,600	699,600,000	10,000,000	5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69,960,000	209,880,000
					3층	3	253,039,200	419,782,546	41,978,254	714,800,000	10,000,000	61,480,000	71,480,000	71,480,000	71,480,000	71,480,000	71,480,000	214,440,000
4층	3				258,420,000	428,709,091	42,870,909	730,000,000	10,000,000	6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5~9층	15				263,800,800	437,635,637	43,763,563	745,200,000	10,000,000	6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74,520,000	223,560,000		
10~19층	30				269,181,600	446,562,182	44,656,218	760,400,000	10,000,000	6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228,120,000		
20층 이상	18				274,562,400	455,488,728	45,548,872	775,600,000	10,000,000	67,560,000	77,560,000	77,560,000	77,560,000	77,560,000	77,560,000	232,680,000		
201동 3호	1층			1	225,321,000	373,799,091	37,379,909	636,500,000	10,000,000	53,650,000	63,650,000	63,650,000	63,650,000	63,650,000	63,650,000	190,950,000		
	2층			1	230,312,400	382,079,637	38,207,963	650,600,000	10,000,000	5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65,060,000	195,180,000		
	3층			1	235,303,800	390,360,182	39,036,018	664,700,000	10,000,000	5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199,410,000		
	4층			1	240,330,600	398,699,455	39,869,945	678,900,000	10,000,000	57,890,000	67,890,000	67,890,000	67,890,000	67,890,000	67,890,000	203,670,000		
	5~9층			5	245,322,000	406,980,000	40,698,000	693,000,000	10,000,000	5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07,900,000		
	10~19층			10	250,348,800	415,319,273	41,531,927	707,200,000	10,000,000	6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70,720,000	212,160,000		
	20층 이상			2	255,340,200	423,599,819	42,359,819	721,300,000	10,000,000	62,130,000	72,130,000	72,130,000	72,130,000	72,130,000	72,130,000	216,390,000		
205동 1호,2호	1층			2	234,985,200	389,831,637	38,983,163	663,800,000	10,000,000	5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66,380,000	199,140,000		
	2층			2	240,224,400	398,523,273	39,852,327	678,600,000	10,000,000	57,86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203,580,000		

			3층	2	245,428,200	407,156,182	40,715,618	693,300,000	10,000,000	5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69,330,000	207,990,000
			4층	2	250,667,400	415,847,819	41,584,781	708,100,000	10,000,000	6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212,430,000
			5~9층	10	255,871,200	424,480,728	42,448,072	722,800,000	10,000,000	62,280,000	72,280,000	72,280,000	72,280,000	72,280,000	72,280,000	216,840,000
			10~19층	20	261,110,400	433,172,364	43,317,236	737,600,000	10,000,000	63,760,000	73,760,000	73,760,000	73,760,000	73,760,000	73,760,000	221,280,000
			20층 이상	20	266,314,200	441,805,273	44,180,527	752,300,000	10,000,000	65,230,000	75,230,000	75,230,000	75,230,000	75,230,000	75,230,000	225,690,000

## ■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은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수분양자는 계약금 10%(1차 및 2차)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분양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2차 계약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분양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제27조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조경녹지선형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b>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b>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 :</b>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b>다른 청약 제한사항</b>은 배제할 수 없음</li> <li>- <b>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b>외의 세대원</b>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b>공급기준</b>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b>구분</b>	<b>처리방법</b>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발표일이 늦은</b>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접수일시가 늦은</b> 당첨건은 <b>무효</b>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 <b>부적격</b> 처리</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추천기관	구 분		추천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필요	
장애인	충청남도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필요없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중소기업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li>■ <b>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b>①지역</b>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b>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li> <li>■ <b>②배점</b></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b>2명</b>	<b>25</b>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li> <li>-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li> <li>-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li> <li>-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li> <li>-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비 고	<p>■ <b>자녀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9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ul>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p>당첨자 선정방법</p>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9 284 535 328">단계</th> <th data-bbox="535 284 869 328">소득구분</th> <th data-bbox="869 284 2136 328">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328 535 445">1단계</td> <td data-bbox="535 328 869 445">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 data-bbox="869 328 2136 44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445 535 563">2단계</td> <td data-bbox="535 445 869 563">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 data-bbox="869 445 2136 56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563 535 647">3단계</td> <td data-bbox="535 563 869 647">우선공급 (25%)</td> <td data-bbox="869 563 2136 647">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647 535 732">4단계</td> <td data-bbox="535 647 869 732">일반공급 (10%)</td> <td data-bbox="869 647 2136 73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data-bbox="309 732 535 817">5단계</td> <td data-bbox="535 732 869 817">추첨공급</td> <td data-bbox="869 732 2136 817">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9 569 535 614">순위</th> <th data-bbox="535 569 2136 614">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9 614 535 647">1순위</td> <td data-bbox="535 614 2136 647">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data-bbox="309 647 535 681">2순위</td> <td data-bbox="535 647 2136 681">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p>■ ③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p>																			
<p>비고</p>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li>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3.(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b>■ 자산기준</b> - <b>부동산가액 산출기준</b>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b>자산보유기준</b>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b>■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b>6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b>■ 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b>■ ①지역</b> :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b>비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li>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	--

<b>4-5</b>	<b>생애최초 특별공급</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6세대
------------	---------------------------------------	----------------------------------

구분	내용															
<b>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b>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b>6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b>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b>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b></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b>①소득구분</b></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b>신생아 우선공급 (15%)</b></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b>신생아 일반공급 (5%)</b></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b>우선공급 (35%)</b></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b>일반공급</b></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b>신생아 우선공급 (15%)</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b>신생아 일반공급 (5%)</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b>우선공급 (35%)</b>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b>일반공급</b>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b>신생아 우선공급 (15%)</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b>신생아 일반공급 (5%)</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b>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b>우선공급 (35%)</b>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b>일반공급</b>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15%)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3.(목)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천안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b>당첨자 선정 순서</b></p> <p>-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b>청약통장 가입기간</b> → ④추첨</p> <p>-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p> <p>-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p> <p>■ ①<b>지역</b>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천안시) 거주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p> <p>■ ②<b>가점</b></p> <p>-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p>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p><b>적용기준</b></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b></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비고	<p>■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검색대상</td> <td>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 </tr> </table>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주택의 범위</td> <td>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td> </tr> </table>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주택처분 기준일</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u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td> </tr> </table>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u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u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u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li> </ol> </td> </tr> </table>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u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li> </ol>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u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li> </ol>		

-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6.05.15.(금) ~ 2026.05.24(일)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b>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6.05.15.(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b>2026.05.16.(토) ~ 2026.05.24.(일) / 9일간, 10:00 ~ 17:00</b>	엘리트 성성호수공원 견본주택(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

- 자격검증서류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유형별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표1>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청자의 경우 생략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신청은 불가) ※인터넷 발급 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제출처 : 엘리트 성성호수공원 건분주택 주인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6.04.23.)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6.04.23.)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점제 청약자 (예비입주자 포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건분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창구 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비속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 - 표시내용 :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건강보험공단 직접방문 필수, 온라인 발급 불가) -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출산특례 청약신청자 중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류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또는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이상 세대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가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의 3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필수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 표시내용 :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기관 : 건강보험공단(※ 공단 직접방문 필수, 온라인 발급시 3개년도 출력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6.04.23.)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표시내용 :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고)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배우자 및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6.04.23.)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부적격주택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 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 (본인 외 모두 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등)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③ 해당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일(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등기소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무직자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 비치)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③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해당 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해당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소득 입증 서류를 준용함	① 견본주택 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 및 휴직 유형(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적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26.(화) ~ 2026.05.29.(금) / 10:00 ~ 17:00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견본주택(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120692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은 지정된 납부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는 지정된 납부일자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자격 검증서류		당첨유형별 자격검증 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비를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작성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사업주체:75,000원/계약자:75,000원)	본인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50%씩 균등 부담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추가 개별통지 서류(적격여부 확인 증빙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공급계약 위임용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50%)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50%)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p>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한 타입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경쟁 미달 타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p> <p>-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p> <p>-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li> <li>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li> <li>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li> <li>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li> <li>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li> </ol> <p>-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p> <p>-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p> <p>- 예비 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 오류가 있는 경우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li> <li>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li> <li>②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li> <li>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제외)</li> <li>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 국민주택 또는 규제지역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li> <li>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제한 기간 중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li> <li>⑥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li> <li>⑦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li> <li>⑧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li> <li>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li> <li>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li> </ol>
<p><b>입주대상자 자격 확인</b></p>	<p><b>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b></p> <p>-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ol> <p>[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p> <p>- 부적격 또는 부정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li> </ol>

	<p>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 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②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분 전)까지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상황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③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멸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7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li> <li>※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7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li> <li>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멸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li> </ul> </li> <li>-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p><b>기타 계약 체결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다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li> </ul>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li> <li>-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멸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li> <li>-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멸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li> </ul>

	<p>다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p> <p>-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p> <p>※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p> <p>※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b></p>	<p>-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계약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1차 및 2차)를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p> <p>-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p> <p>-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p> <p>-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p> <p>-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p> <p>-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p> <p>-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p> <p>-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p> <p>-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p>-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li> <li>-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li> </ul>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지정일
84A	14,500,000	1,450,000	13,050,000
84B	14,500,000	1,450,000	13,050,000
111	18,900,000	1,890,000	17,01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잔금)	국민은행	393301-04-120717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고풍압 구조 검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흘통, 선흘통BOX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및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외부 전면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추후 전면창 설치 등 구조 변경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 또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사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상·하부층 확장 세대일 경우 발코니를 통한 배수, 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배수, 우수배관 설치 위치는 확장형 세대기준으로 설치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동 배치에 의해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설치 가구의 배치, 규격,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단위 : 원 / VAT 포함)

약식표기	옵션 선택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실내기)	설치대수	공급금액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 지정일)
84A	일반형 (시그니처스타일 미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600,000	560,000	5,040,000
		6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10,600,000	1,060,000	9,540,000
	일반형 (시그니처스타일 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600,000	560,000	5,040,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8,900,000	890,000	8,010,000
	프리미엄형 (시그니처스타일 미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900,000	690,000	6,210,000
		6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12,800,000	1,280,000	11,520,000
프리미엄형 (시그니처스타일 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900,000	690,000	6,210,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0,900,000	1,090,000	9,810,000	
84B	일반형 (시그니처스타일 미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640,000	564,000	5,076,000
		6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10,740,000	1,074,000	9,666,000
	일반형 (시그니처스타일 선택 시 또는 알파룸 유상옵션 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5,640,000	564,000	5,076,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070,000	907,000	8,163,000
	프리미엄형 (시그니처스타일 미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940,000	694,000	6,246,000
		6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	12,930,000	1,293,000	11,637,000
프리미엄형 (시그니처스타일 선택 시 또는 알파룸 유상옵션 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940,000	694,000	6,246,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060,000	1,106,000	9,954,000	
111	일반형 (시그니처스타일 미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000,000	600,000	5,400,000
		6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	11,200,000	1,120,000	10,080,000

	일반형 (시그니처스타일 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6,000,000	600,000	5,400,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9,400,000	940,000	8,460,000
	프리미엄형 (시그니처스타일 미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350,000	735,000	6,615,000
		6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6	13,400,000	1,340,000	12,060,000
	프리미엄형 (시그니처스타일 선택 시)	3개실 (거실, 주방, 침실1)	3	7,350,000	735,000	6,615,000
		5개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	11,300,000	1,130,000	10,17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에어컨 옵션선택 및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LG제품으로 계약이후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기본 및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 외의 실에는 에어컨 배관이 미시공되며, 추후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 설치 시 기존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옵션 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실외기를 실외기실에 동시설치(2대설치)하여 냉방효율이 저하되어 기능상 장애 발생에 따른 하자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미설치 시,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 침실1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전원은 실외기실에 제공)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위 내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로 실외기 설치 시 상부 전열교환기의 유지보수 및 필터교환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이더라도, 열지, 삼성 등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품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및 기타 홍보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 실내기 조합률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실내기 및 실외기 장비류는 제조사 사정에 따라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구분	항목	약식표기	옵션품목 및 내용		공급금액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 지정일)		
주방	주방 특화	84A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사각싱크볼	1,450,000	145,000	1,305,000	택1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보조주방(가구도어, 보조주방가구,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주방조명특화	10,500,000	1,050,000	9,450,000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주방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주방조명특화	6,200,000	620,000	5,58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보조주방(가구도어, 보조주방가구, 세라믹타일 상판) + 주방조명특화	13,500,000	1,350,000	12,15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주방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주방조명특화	9,200,000	920,000	8,280,000		
		84B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사각싱크볼	2,150,000	215,000	1,935,000	택1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주방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주방조명특화	11,190,000	1,119,000	10,071,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주방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주방조명특화	14,900,000	1,490,000	13,410,000		
		111	베이직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사각싱크볼	1,920,000	192,000	1,728,000	택1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보조주방(가구도어, 보조주방가구,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코너장 + 주방조명특화	16,760,000	1,676,000	15,084,000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주방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코너장 + 주방조명특화	13,200,000	1,320,000	11,88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보조주방(가구도어, 보조주방가구, 세라믹타일 상판) + 코너장 + 주방조명특화 + 독립형후드	19,400,000	1,940,000	17,460,000		
				세라믹타일 벽/상판 + 사각싱크볼 + 외산수전 + 고급형 주방가구(유리도어, 상하부간접조명) + 주방팬트리(가구도어, 시스템가구) + 코너장 + 주방조명특화 + 독립형후드	16,210,000	1,621,000	14,589,000		
		아일랜드	84A	시그니처 스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1,890,000	189,000	1,701,000	택1

식탁	84B	선택 시	세라믹타일 상판 +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2,910,000	291,000	2,619,000	택1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1,300,000	130,000	1,170,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확장형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2,800,000	280,000	2,520,000		
			세라믹타일 상판 + 확장형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3,800,000	380,000	3,420,000		
	111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2,930,000	293,000	2,637,000	택1	
			세라믹타일 상판 + 아일랜드장(고급형 수저분리함)	3,790,000	379,000	3,411,000		
	다이닝 홈바	111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 시	유리장식 + 세라믹타일 상판 + 다이닝 홈바	4,700,000	470,000	4,230,000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장	84A	3도어형 냉장고장		1,700,000	170,000	1,530,000	택1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LG) + 냉장고장		7,200,000	720,000	6,480,000	
		84B	3도어형 냉장고장		1,460,000	146,000	1,314,000	택1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LG) + 냉장고장			6,980,000	698,000	6,282,000			
111		3도어형 냉장고장		4,590,000	459,000	4,131,000	택1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LG) + 냉장고장		9,870,000	987,000	8,883,000		
현관	84A	매립형 3연동 슬라이딩중문		1,200,000	120,000	1,080,000		
		현관 특화 선택 시	매립형 원슬라이딩 포켓중문	1,500,000	150,000	1,350,000		
		84B	매립형 3연동 슬라이딩중문		1,200,000	120,000		1,080,000
			현관 특화 선택 시	매립형 원슬라이딩 포켓중문	1,500,000	150,000		1,350,000
		111	매립형 3연동 슬라이딩중문		1,200,000	120,000		1,080,000
			현관 특화 선택 시	매립형 원슬라이딩 포켓중문	1,500,000	150,000		1,350,000
	84A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 시	현관 워크인장+ 복도 워크인장	2,800,000	280,000	2,520,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 시	현관 케어룸(LG의류관리기 포함) + 복도 워크인장	4,900,000	490,000	4,410,000		
			확장형 현관 폴딩도어 워크인장 + 복도 워크인장	2,800,000	280,000	2,520,000		
		84B	현관 폴딩도어 워크인장		1,100,000	110,000		990,000
		111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 시	현관 워크인장 + 복도 워크인장	3,620,000	362,000		3,258,000
			시그니처 스타일 선택 시	현관 케어룸 (LG의류관리기 포함)	3,590,000	359,000		3,231,000
				확장형 현관 폴딩도어 워크인장	1,700,000	170,000		1,530,000
		복도	복도 수납특화	84B	복도 워크인장	1,700,000		170,000

			복도 케어룸 (LG의류관리기 포함)		3,900,000	390,000	3,510,000	
알파룸	알파룸 특화	84B	시그니처 스타일 미선택 시	알파룸 워크인장 + 침실2 드레스룸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	벽바닥 특화	84A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광폭강마루(침실)		2,100,000	210,000	1,890,000	택1
			전실 광폭강마루		1,100,000	110,000	990,000	
		84B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바닥)+ 광폭강마루(침실)		2,650,000	265,000	2,385,000	택1
			전실 광폭강마루		1,050,000	105,000	945,000	
		111	디자인월/마루(거실/복도 벽,바닥)+ 광폭강마루(침실)		2,600,000	260,000	2,340,000	택1
			전실 광폭강마루		1,350,000	135,000	1,215,000	
	거실 아트월 특화	84A	세라믹타일		3,500,000	350,000	3,150,000	택1
			디자인월		1,500,000	150,000	1,350,000	
		84B	세라믹타일		3,500,000	350,000	3,150,000	택1
			디자인월		1,500,000	150,000	1,350,000	
		111	세라믹타일		4,160,000	416,000	3,744,000	택1
			디자인월		1,690,000	169,000	1,521,000	
	거실조명 특화	84A	[거실] 우물천장 + 직간접조명(2면) + 실링팬 + 대형 월패드(24인치)		3,900,000	390,000	3,510,000	
		84B	[거실] 우물천장 + 직간접조명(2면) + 실링팬 + 대형 월패드(24인치)		3,940,000	394,000	3,546,000	
111		[거실] 우물천장 + 직간접조명(2면) + 실링팬 + 대형 월패드(24인치) + [침실1] 우물천장/디자인 조명 + 실링팬		6,750,000	675,000	6,075,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84A	분리형 파우더장+고급드레스룸+가구도어		4,800,000	480,000	4,320,000	택1
			통합형 파우더장+고급드레스룸+유리슬라이딩도어		4,800,000	480,000	4,320,000	
		84B	분리형 파우더장+고급드레스룸+가구도어		4,410,000	441,000	3,969,000	택1
			통합형 파우더장+고급드레스룸+유리슬라이딩도어		4,410,000	441,000	3,969,000	
	111	고급드레스룸+가구도어		4,130,000	413,000	3,717,000		
	침실1 특화	111	고급형 안방 불박이장		5,800,000	580,000	5,220,000	
침실2	침실2 불박이장 (1개소)	84A	침실2 불박이장		1,100,000	110,000	990,000	
		84B	침실2 불박이장		1,100,000	110,000	990,000	
		111	침실2 불박이장		1,300,000	130,000	1,170,000	
침실3	침실3 불박이장 (1개소)	84A	침실3 불박이장		1,100,000	110,000	990,000	
		84B	침실3 불박이장		1,100,000	110,000	990,000	
		111	침실3 불박이장		1,300,000	130,000	1,170,000	
욕실	욕실	84A	마감(타일)	공용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고급형 젠다이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3,500,000	350,000	3,150,000	

특화 (공용 /부부)	84B	공용욕실	부부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고급형 젠다이 대형 벽/바닥 타일 + 외산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젠다이 + 디자인욕가+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 고급형 액세서리	3,900,000	390,000	3,510,000
		부부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외산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젠다이 + 디자인욕가+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 컬러샤워부스 + 고급형 액세서리	3,900,000	390,000	3,510,000
		마감(타일)	공용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고급형 젠다이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부부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고급형 젠다이	3,490,000	349,000	3,141,000
		공용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외산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젠다이 + 디자인욕가+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 고급형 액세서리	3,860,000	386,000	3,474,000
		부부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외산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젠다이 + 디자인욕가+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 컬러샤워부스 + 고급형 액세서리	3,860,000	386,000	3,474,000
		마감(타일)	공용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고급형 젠다이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부부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고급형 젠다이	4,070,000	407,000	3,663,000
	111	공용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외산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젠다이 + 디자인욕가 +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 (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 욕조 측면 타일 마감 + 고급형 액세서리	4,390,000	439,000	3,951,000
		부부욕실	대형 벽/바닥 타일 + 외산 수전 + 고급형 세면대 + 고급형 젠다이 + 디자인욕가 + 고급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 고급형 거울장(하부센서등/칫솔살균기포함) + 컬러샤워부스 + 고급형 액세서리	4,390,000	439,000	3,951,000

■ 가전 및 기타

구분	항목	약식표기	옵션품목 및 내용	공급금액			비고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 시)	잔금(90%) (입주지정일)		
가전 /기타	인덕션	전타입	쿠첸 (CIR-BB330TOB2)	550,000	55,000	495,000	택1	
			LG (BEI3ASB4BIE)	1,250,000	125,000	1,125,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LG(DIE6PT)	1,800,000	180,000	1,620,000		
	빌트인 광파오븐	전타입	LG(MZ385EBTAD)	750,000	75,000	675,000		
	스마트 복합환풍기	전타입	공용욕실	힘펠 (휴젠뜨 루미)	700,000	70,000	630,000	
			부부욕실	힘펠 (휴젠뜨 루미)	700,000	70,000	630,000	
드레스룸	84A/B	일반형	힘펠 (DHV-5PCCU)	1,200,000	120,000	1,080,000	택1	

제습기	111	고급형	대우컴프레셔 (DC51BDABA)	2,000,000	200,000	1,800,000	택1
		일반형	힘펠 (DHV-5PCCU)	1,200,000	120,000	1,080,000	
		고급형	대우컴프레셔 (DC51BDABA)	2,000,000	200,000	1,800,000	
열차단필름	84A			2,300,000	230,000	2,070,000	
	84B			2,090,000	209,000	1,881,000	
	111			2,480,000	248,000	2,232,000	
복합안전방충망	84A			2,600,000	260,000	2,340,000	
	84B			2,400,000	240,000	2,160,000	
	111			2,600,000	260,000	2,340,000	
무기질도료	84A			3,400,000	340,000	3,060,000	
	84B			3,220,000	322,000	2,898,000	
	111			3,900,000	390,000	3,510,000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전타입		경동나비엔 (TAC521-20S)	1,150,000	115,000	1,035,000	
전동빨래 건조대	전타입			250,000	25,000	225,000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사업주체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특화옵션 계약 시점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전기, 통신설비 마감자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중 가구는 타입별로 수납공간의 크기나 디자인 구성, 가구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시공상 문제 및 하자를 제외한 제품 자체의 하자 및 고장 등의 책임은 사업주체가 아닌 본 제품의 최초 제조업체에 있으며, 제품의 A/S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최초 제조업체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항목별 부분선택이 불가하며, 교차선택도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시 확장부위에 시공되는 추가품목임에 따라 구조상의 이유로 선택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국민은행	393301-04-120720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선) 유의사항

- 유상옵선 선택 품목 중 가구는 타입별로 수납공간 크기, 디자인 구성,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 시 항목별 부분 및 교차 선택은 불가하며,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중문 설치 옵션은 견본주택과 본 시공 시 색상 및 디자인 세부 디테일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중문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유상옵선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 디딤판 및 벽체 두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매립형 3연동 슬라이딩 중문과 매립형 원슬라이딩 포켓 중문 선택에 따라 열림 방향(손잡이 위치)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매립형 원슬라이딩 포켓중문 선택 시 사후 관리 또는 결함 보수 시 현관 가구 철거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공사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케어룸 유상옵선 선택 시 다용도 살균기가 1EA 설치되며, 각 타입별 평형별 디자인 상이에 따라 살균 적용공간이 상이하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케어룸 옵션 선택 시 다용도 살균기 및 장식장 조명 안장기 설치로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케어룸 옵션 선택 시 가구 조명 스위치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형태와 스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케어룸 옵션 선택 시 가구 및 벽체 마감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타입 및 평면별 의류관리기의 도어 열림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특화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워크인장, 현관사이즈, 디딤판사이즈 등 시공부위 및 규격을 포함한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워크인장, 현관사이즈, 시공부위 및 규격을 포함한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현관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워크인 공간의 벽체가 두꺼워지며 내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 선택 시 거실, 복도벽 및 소파 뒷벽에 디자인월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 벽장재 나누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조명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과 벽/바닥특화(광폭강마루) 옵션은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 선택 시 개별 옵션선택 여부에 따라 시공성 향상 및 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디자인월의 대체자재(시트패널)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 선택 시 벽장재 시공으로 인하여 복도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 선택 시 디자인마루 시공범위는 거실+주방+복도 바닥이며, 침실 바닥에는 광폭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 선택 시 디자인월/마루 자재는 기능성자재가 아니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스크래치, 찍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특화(디자인월/마루)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자재 나누기 및 마감상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특화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특화 옵션 선택 시 자재 수급에 따라 제품 사양, 디자인 및 제조사/원산지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케어룸 옵션 선택 시 코너 수납장은 수납효율 특화 설계 상품으로, 도어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제작되어, 동시 개폐가 불가능하므로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 유상옵선 선택 시 기본형 대비 마감재 재질 및 색상 등이 변경되며, 본시공 시 여건에 따라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선택 시 주방 조명은 타입별 디자인 및 색상이 상이하며, 선택 불가하오니 계약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선택 시 아일랜드식탁 옵션을 추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수저분리함을 포함한 아일랜드 제공품목에 대한 수납공간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84B타입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미선택 시 아일랜드 식탁을 추가 선택할 경우 기본형 수저분리함과 고급형 수저분리함이 함께 시공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111타입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선택 시 침실4의 커튼박스 길이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유상옵선 선택 시 타입별/평형형 가구,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유상옵선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및 상판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정된 색상만 선택 가능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 미선택 시 벽면이 벽지, 걸레반이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의 냉장고 구간 내경과 3도어형 냉장고장 옵션이 냉장고 구간 내경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냉장고의 가구 내경 및 가구 패널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냉장고와 가구 사이에 설치 매뉴얼에 의한 이격이 발생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도어형 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설치 예정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규격(가로.세로.깊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상옵선 선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외부 마감은 가구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오니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선택 시 가구조명의 안정기 설치로 주방장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선택 시 가구 조명 스위치의 색상, 형태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시그니처스타일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저분리함 및 약세사리, 가구 하드웨어의 색상, 디자인,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유상옵선 선택 시 가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미선택 시 가스 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 내폭이 일부 좁아지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유상옵선 선택 시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는 전기식(가스식 미설치)으로 설치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유상옵선 선택 시 발코니에서 주방까지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오니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유상옵선 선택 시 해당 공급금액은 가스배관 미설치 감소비용과 인덕션 추가 증가금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계약 전 옵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1타입 침실1 특화 옵션 선택 시 장식장 조명 안정기 설치로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11타입 침실1 특화 옵션 선택 시 가구 조명 스위치 위치는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와 스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1타입 드레스룸 특화 옵션은 파우더장을 미포함하며, 파우더장은 침실1 특화 옵션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유상옵선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기본형 대비 디자인 및 마감자재 색상등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통합형 드레스룸과 분리형 드레스룸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드레스룸 내부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최상부 선반은 조명형이며, 선반 이동시 조명 배선이 노출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선반 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조명 안정기 설치로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포함된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내 포함 된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84B타입 통합형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미려한 시공을 위해 벽체두께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부부/공용 욕실 기본형/유상옵션형 바닥 및 벽 타일 나누기 및 욕가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시공 위치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 상세,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레인샤워는 돌출형으로 변경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마감(타일) 옵션과 공용욕실/부부욕실 옵션은 중복선택이 불가하므로, 계약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안전방충망 유상옵션 선택 시 미세먼지망은 주방창에만 시공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의 바닥·벽 타일 나누기 및 욕가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 욕실 특화옵션 선택 시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디자인, 마감상세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설치 위치 및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여건(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선택품목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며,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또는 법률개정이나 행정명령, 민원, 공사중지 처분(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 원자재파동, 문화재발굴, 전염병의 유행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지, 하천,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학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성,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하천,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업성2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성,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업성,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도로 등 여타 추진 중에 있는 일체의 교통개선 계획과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 부지(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내의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린공원, 하천, 상업시설, 공동주택, 학교 건설예정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조망권 및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차량진·출입구, 학원차량 대기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의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력 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식재 및 시설물의 경우 현장 여건 및 소방협약(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규모 및 구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녹지의 형태, 면적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청 등의 민원, 이의제기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 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지붕의 옥외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세대에서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상1층(8대) 일부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과 분리되어 사용되므로 아파트 입주민과 별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계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4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식재 계획,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옹벽, 도로, 교량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의 따라 위치 및 개수, 색상, 디자인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 중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단지 부지 외 조경 및 계획도로, 주변 지형, 주변 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설치된 로고의 개수 및 위치, 브랜드 디자인, 명칭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 시 제시된 조감도 및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식재표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방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식재 여건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일정시점 이전에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옵션선택품목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 업성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은 신설대체이전(가칭 '천안업성초등학교')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설립시기와 입주시기가 다를 경우 인근 초등학교로 임시배치 되고 이를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임시배치기간 동안 통학버스를 운영합니다.</li> <li>- 초등학교 통합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고, 교육정책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i> <li>-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li> <li>- 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상기 학교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청, 어린이집 관련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신설학교 개교 시기는 주변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어린이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19세대로,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집은 205동 남쪽 1층에 위치)</li> </ul>

<b>단지</b>	<b>외부여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승인상의 미표시된 면적(대지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사업지구 및 인접지역에 송전선로(철탑포함) 및 각종 도시시설물 등이 계획 또는 위치되어 있는 바,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업성, 성성 도시개발지구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근 단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교통장애 발생 및 주거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확장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공원, 하천 등 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업성, 성성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사면처리,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높이 및 옹벽 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와 주변도로간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위치하여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사생활침해 및 빛공해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서측 공원, 종교시설, 공동주택 계획 / 단지 북측 번영로, 완충녹지 계획 / 단지 동측 공동주택, 초등학교 계획 / 단지 남측 준주거시설, 29m도로가 위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 먼지, 눈부심, 교통혼잡,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유해시설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본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부지 외 조경 및 계획도로, 주변 지형 및 고저차, 주변시설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li> </ul>
<b>단지배치 및 지상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시설물 및 식재포함)과 차량차단기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1층 세대의 입주자는 공간의 바닥포장 및 조경수의 추가식재,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는 입주민 및 인근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li> <li>-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와 규격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므로 인근 세대(206동)는 시야차단,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처리장은 1층에 설치되므로 인근 세대(206동)는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은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추가설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시설, 어린이,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4~5개층(202동, 203동, 204동, 205동), 3~4개층(201동, 206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입니다.
- 커뮤니티시설 외부의 지정석재 및 지정강판, 지정판넬 혼합마감입니다.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진행시 외부 입면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생성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의 기둥, 벽체 등은 색채디자인 적용으로 일부 석재 및 석재뿔칠로 시공됩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탐라이트,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단지내 관로, 투입구 등)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및 보관장소는 수집운반차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상부 일부 등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계획, 조경시설계획, 조경선형, 포장패턴계획 등), 저층부[4~5개층(202동, 203동, 204동, 205동), 3~4개층(201동, 206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계획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관리업체의 입주규정에 따라 사다리차가 이용 가능한 동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별 승강기 속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속도가 다르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및 문주,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와 같은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중계기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아파트 201동, 204동, 205동, 206동
  -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설치 예정 위치: 아파트 201동, 204동, 205동, 206동, 지하1층, 지하2층
  - 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등이 돌출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동별 소방급기용 D/A가 설치예정으로 필로티 또는 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 동의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탐라이트)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상부 일부 동(204동 예정) 옥상에는 TV 수신용 안테나가 설치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천장고는 전층 세대 2,300mm로 적용되었습니다.
  - 1층 세대를 포함한 전세대의 욕실 천장고의 높이는 모두 동일하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01동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단지 주출입구 위치하여 소음, 빛공해,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측벽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02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02동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단지 부출입구 위치하여 소음, 빛공해,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측벽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03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03동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단지 부출입구 위치하여 소음, 빛공해,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후면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서측으로 종교시설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 소음, 실외기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04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04동 1층에 게스트하우스 및 주민카페가 배치되어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층 진입 영역은 일부 레벨차로 인해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측면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0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05동 남측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가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측면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06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06동 지하1층에 부대시설(주민운동시설)과 연결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동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측면에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측면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 북측으로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여 소음, 빗공해,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동의 지붕층에는 태양광집광판(PV)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헬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902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8대, 총 910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옥내소화전과,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 설치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제연헬륨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유효높이	주차면 높이	비고
지하1층	2.7m	2.1m 이상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2층	2.3m		택배차량 불가가능

- 지하주차장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제연헬륨, 주차장 급배기팬, 유인헬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 입주 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헬륨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주동마다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공용홀로부터의 접근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1층 공동주택 주차장에 각동 코어별로 1개소가 설치됩니다. 단, 추후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진입 상부 및 램프 벽면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동등 이상의 품질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주차공간 내 전기차충전시설 급속 5개소, 완속 42개소, 콘센트 44개소 설치 예정)</li> <li>- 전기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 등에 따른 충전방해 민원발생시 관계법령 및 입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당사와는 무관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출입구 주차차단기 위치는 차량 입출입 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b>부대복리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 4개소), 외부계단, 생활폐기물처리장,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분양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 시 홍보물, 이미지 및 견본주택의 부대시설 모형, 마감, 시설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포함)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붕에는 옥상 녹화가 적용되어 있어 누수하자를 고려하여 지붕 점검구, 외부 점검용 방호울사다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용역원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지하층 및 데크층에 설치되며, 일부 시설은 환기 및 채광창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계단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의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분진,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시 변동 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b>기 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ul>

	<p>※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5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li> <li>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li> </ol> </li> <li>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li> <li>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li> <li>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 변경</li> <li>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조경계획 등) 및 타사 또는 사업주체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무인택배시스템의 설치 위치 및 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한 쪽 출입구 쪽에 더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li> <li>-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로당~외부 보행로 구간 바닥 레벨 계획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변경 확정시 안내문이 발송 될 수 있습니다.</li> </ul> </li> </ol>
<p><b>견본주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은 84B, 111타입이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계단, 옹벽 및 조경석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천장 환기구,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환기장비 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의 사양, 제조사, 규격,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 등기구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로 적용 됩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 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습니다.</li> <li>- 조경계획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부서(구청 및 시청)의 조건 및 사업주체의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최초의 계획(사업승인 및 카탈로그 및 CG, 건본주택 모형)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건본주택의 모형 및 CG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현장 여건 등에 이유로 실제 설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단위 세대	<p style="text-align: center;"><b>세대 및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확장 발코니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도면, 건본주택과 달리 발코니 길이 및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건본주택과 상이하며 단열재마감, 실 사용공간의 협소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및 도면에서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비확장 발코니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의 개소 및 위치,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비확장 발코니 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인접세대 하자 발생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계약자 본인 책임입니다.</li> <li>- 비확장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세대 비확장의 경우, 하부 세대의 천장부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천장형 에어컨 위치(웁선 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텐박스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과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 부분과 접한 확장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벽체 돌출이나 우물천장 깊이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샷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li> <li>-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벽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에는 본 시공 시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정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통상적으로 세대 내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필히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일부세대(최하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층 등)의 경우에는 피난을 위하여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및 모형,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기준에 따라 실외기실에 유지보수를 위한 문이 설치가 되었으며, 해당 문의 이용 용도 특성상 실외기실 전면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아 협소하며 가전(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의 배치로 이용에 제약 및 불편이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에 수전과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폭, 높이, 용량(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설치되는 목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보호대가 전면 및 후면에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및 다용도실의 단차는 바닥구배에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닙니다.
- 욕실 내 일부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단위세대 현관 및 펜트리(일부)에는 미설치 됩니다.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입별 시공되는 배관위치에 따라 커튼박스의 사이즈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 되는 우수관 및 배수관에 의해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다용도실 및 테라스에 바닥배수구 및 우수, 배수, 오수배관, 가스계량기,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 평면구성상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발생할 경우 세대내 설치되는 수전 및 실외기(옵션 선택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의 경우 해당 실 출입문쪽에 냉수가 설치되므로 세탁기 설치 시 냉,온수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 불량에 따른 제품 하자 발생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계약자 본인 책임입니다.
-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동별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측면 또는 위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부분의 상부장은 깊이나 높이 또는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현관,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PD, 다용도실)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중 일부는 이동식이 아닌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벽면 일부 경량벽체에 과도한 크기의 TV를 설치할 경우 별도 보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파손시 당사와는 무관하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천장 등의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부분의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에는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및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되며, 난방 제어시스템 및 각실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 디자인, 규격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하므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실시공 시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시트패널, 디자인월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 또는 벽에는 별도의 마감재(강마루, 디자인 월/마루, 타일 등)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평형별로 가구 구성,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 및 실에 따라 적용되는 창호 및 하드웨어(손잡이 등)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창나뉘기,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4~5개층(202동, 203동, 204동, 205동), 3~4개층(201동, 206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홍보물,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옥외공간(테라스 등)에 배수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물막힘 및 동파로 인한 해당 세대 우수 유입 및 하부세대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지붕 공간에 대한 사유화의 권리가 없지만 관리를 위한 통로는 필요하므로 관리사무소 요청시 입주자의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 및 세대내 환기배관(주방 및 욕실 직배기 배관 포함)으로 인해 본 공사 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고,

<p>제공 / 전시품목</p>	<p>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시 홍보물,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4~5개층(202동, 203동, 204동, 205동), 3~4개층(201동, 206동), 하부 근생, 복리시설, 필로티, PIT 및 DA 포함]와 고층부(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어있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 또는 유상옵션, 전시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li> </ul>
<p>기계전기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층 욕실 오배수 배관이 하부층 욕실 천정에 시공되어지며, 해당 배관 유지보수 시 하부층 세대를 방문(출입)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세면기 후면, 드레스룸, 팬트리, 하부층 욕실 천정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세대를 방문(출입) 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하향식 피난구실, 발코니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 배관(우수, 우수, 배수, 주방 및 욕실 직배기배관 등), 소방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기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및 주방은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직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됩니다.</li> <li>-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우수, 배수 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 배관 및 직배기 환기구 설치에 따라 외벽 커튼월 크기 및 위치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 마감재의 위치 제조사, 디자인, 기능, 재질, 수량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p>공용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li> <li>- 주동의 형태 및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공용부 에너지 관련 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는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	--	--

**11 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엘리트 성성호수공원 2BL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6712026-101-0000100 호	227,723,44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전기 및 수도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열쇠인수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과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2개소), 유아놀이터(1개소),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시설 4개소)), 주차장, 경비실, 기계/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미만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 ~Ⅶ)으로 표기

구 분	등 급
중요도 (1)	내진 I 등급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열관류율[W/m²K] : 1.230 기밀성능(등급) : 0.94(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열관류율[W/m²K] : 0.808 외창 : 5CL+12Air+5LE, 내창 : 5CL+12Air+5LE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	적용	가정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고효율 전동기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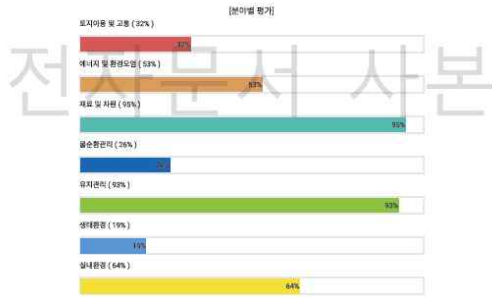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현대 힐스테이트 206,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인증번호	0-08100-2020-0088-0
건축주	제일건설(주)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회
준공일	2020년 11월 19일	유효기간	2020년 0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정동 100-1번지 100동	<b>인증 등급</b>	
층수	지하2층, 지상22층	인증등급	부활(그린)인증
면적(㎡)	103,576.92	인증종도	도시 주택용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인증기준	한국그린빌딩협회 제2020-0088호
설계자	현대건설(주)사설, 조영수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부활, 그린인증) 건축물로 인증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차량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총합등급 ★★  
2020년 01월 26일

(사) 한국그린빌딩협회의 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면적에 따라 인증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현대 힐스테이트 206,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2. 신청자	제일건설(주)
3.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정동 100-1번지 100동	4. 성능등급	
가. 주요 관련 등급	성능등급	다. 관련 관련 등급	성능등급
1. 생활환경적 차등성능	★★	20. 단열재 녹지율 조성	*
2. 생활환경적 차등성능	*	21. 차양면적 녹지율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등성능	★★★★	22. 생활면적 녹지율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출 조성	-
5. 외장실 내부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제형의 적용	★★★★
가. 주요 관련 등급	성능등급	25. 차양 면적 조성률	*
1. 내구성	*	26. 단열재 내기밀 조성률	★★★★
2. 가연성	★★★★	27. 차등준도열용량지 설치 수준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가.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등급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1. 단열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외부보행자 전용도로화	★★★★
다. 관련 관련 등급	성능등급	2. 대중교통역 근접성	★★★★
1. 가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3. 차양기둥차양 및 차양기둥도로 차양성	★★
2. 과도한 지하개발 차양	-	4. 생활면적차양 접근성	★★
3. 횡포서 양생통풍 최소화	-	5. 생활면적의 환경적 계획	★★★★
4. 횡포서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5. 에너지 성능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6. 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관리사항 설치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7. 단열재에너지 효율	*	9. 단위세대별 사회적 역사배려	*
8. 차등소 에너지효율 기술의 적용	★★	10. 공동주택의 사회적 역사배려	*
9. 온천수 보온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0. 환경성적인 재료(EPI)의 사용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1. 차등소 저감의 사용	★★★★	13. 실내외 온도 및 소음도	*
12. 차등소 저감의 사용	★★★★	14. 방열면적 콘덴트	*
13. 유해물질 저감 저감의 사용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가. 화재안전 관련 등급	성능등급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존사용 실적	★★★★	1. 감지 및 경보설비	성능등급
16. 친환경적	-	2. 제반설비	★★
17. 비닐 및 유출지하수 이용	-	3. 내화성능	*
18. 절수용 기기 사용	★★★	4. 수평면적기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1월 26일

(사) 한국그린빌딩협회의 회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구 분	주차대수	비 고
법정대수	722대	
주차대수	902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5m~7.0m	지하1층 : 2.7m / 지하 2층 : 2.3m	2.7m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 축	전 기	소 방	정보통신
상 호	(주)대교원이앤씨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이룸이앤씨	(주)한빛안전기술단
금 액	2,822,722,100	622,237,000	826,992,000	168,96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사업주체 겸 시공사
상 호	업성개발피에프비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709-88-01972	314-81-07954
법인등록번호	160111-0586557	160111-0003121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5, 3층 301바호(월평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사업장 위치	견본주택 위치
	
<p>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 업성2구역 2BL</p>	<p>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p>
<p>분양문의</p>	<p>1661-2223 (10:00 ~ 17:00)</p>
<p>홈페이지</p>	<p>※ 홈페이지 : <a href="http://www.엘리프성성호수공원.com">www.엘리프성성호수공원.com</a></p>